안산대학교	제증명발급규정	규정번호	3-4-12
		제정일자	1997.03.01
		개정일자	2018.03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의 제증명서(이하 “증명서”라 한다)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증명서의 종류)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식은 따로 정한다.

1. 졸업증명서(국 · 영문)
2. 졸업예정증명서(국 · 영문)
3. 수료증명서(국 · 영문)
4. 재학증명서(국 · 영문)
5. 휴학증명서(국 · 영문)
6. 제적증명서(국 · 영문)
7. 성적증명서(국 · 영문)
8. 교직예정증명서(국 · 영문)
9. 장학금수혜·비수혜증명서(국 · 영문)
10. 교육비 납입증명서(국문)

제3조(증명서 발급) 제2조 각호에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
1. 인터넷증명발급
2. 민원우편제도
3. 방문발급

제4조(졸업예정증명서 발급) 졸업예정증명서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 할 시에 발급할 수 있다.

1.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재학생
2. 필수교과목 이수 가능자
3. 졸업이수학점 충족 가능자

제5조(수수료) 증명수수료는 총장이 정한다.

제6조(기타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) 이 규정 제2조에 정한 증명서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타 제·증명서(응시원서 등)및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제5조에 의한다.

제7조(발급 제한) 아래 각 호에 해당될 시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도서관규정에 의한 발급 제한대상
2. 기타 제규정에 의한 발급 제한
3. 증명발급 자료의 전산처리 작업 등을 위한 일시적(한시적) 발급 제한
4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부 칙

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